**법인계약부속약정서(광고마케터용)**

에프엠피라이프㈜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광고마케터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아래와 같이 소개.추천한 법인대표자의 C\_Plan정기보험 가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추가 부속약정서를 작성한다.

【추천 및 가입상품 내역】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보험사 | 상품명 | 계약자 | 피보험자 | 월납 보험료 | 청약번호 |
| 한화생명 | 간편가입  CEO정기보험 |  |  |  |  |

**제1조 【표시광고법 제3조 “부당한 표시‧광고 행위의 금지”의무 준수】**

“을”은“갑”의 플렛폼에 상기 C\_Plan정기보험상품을 광고.추천함에 있어서 표시광고법 제3조의 의무를 준수하여 건전한 상관례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.

**제2조 【광고 및 추천 수수료 지급방식】**

“갑”은 “을”의 광고.추천의 결과로 발생한 광고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수금과 연동하여 CPS방식으로 계산된‘첨부1.수수료지급 안내문’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.

**제3조 【광고 및 추천 수수료 분할지급 기간】**

“갑”은 “을”이 추천한 법인대표자의 월납 보험료 36회차 계약유지 의무기간의 수금과 연계하여 성실하게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합니다.

**제4조 【광고 및 추천 수수료 분할지급】**

“갑”은 제3조의 계약유지 의무기간 동안 법인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, 품보해지 그리고 미유지로 인한 실효,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수기준과 연동하여 아래와 같은 환수율로 기 지급한 총 광고수수료에서 환수함에 동의 합니다.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미유지회차 | 1~6회차 | 7~12회차 | 13~18회차 | 19~24회차 | 25~36회차 |
| 환수율 | 100% | 70% | 30% | 10% | 5% |

**제5 조 【민원해지 및 계약 원천무효로 인한 환수 및 위약금배상】**

“을”은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 등으로 발생한 보험계약의 원천무효 상황 발생시 기 지급수수료 전액 및 환수금액 배수의 위약금을 “갑”에게 배상함에 동의하고 확약합니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기 부속약정 내용에 합의하고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약정서를 나누어 보관하기로 합니다.

“갑” “을”

상 호 : ㈜에프엠피라이프 마케터 성명 : ( )

사업자번호 : 206-88-00950 주민번호 : ( - )

대표이사 : 박 익 수 (인) 주 소 : (

)

마케터연락처: (010)- ( ) – ( )

연대보증인(법인대표): 자필서명 (서명)